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검사대상자”란 영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 마. (생략)</p> <p>4. ~ 6. (생략)</p> <p>7. “공동검사”란 영 제35조제9항, 같은 조 제11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공동검사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영 제35조제4항제3호에 ----- ----- -----.</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4. ~ 6. (현행과 같음)</p> <p>7. ----- 영 제35조제10항, ----- --제12항-----제15항에----- ----- -----.</p>	<p>○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21.9.14.)에 따른 조 번호 변경 반영</p> <p>○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21.9.14.)에 따른 조 번호 변경 반영</p>
<p>제10조(검사실시계획의 통보)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통지</p>	<p>제10조(검사실시계획의 통보) ① ----- ----- -----</p>	<p>○ 증거인멸 우려 검사 대상자는 검사 시작하는 날에 검사계획을 통보하는 취지를</p>

현행	개정안	비고
<p>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에 검사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외국환거래 검사계획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함께 송부하고, 검사준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제11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연기 신청서</p>	<p>----- ----- -----</p> <p>-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에 검사계획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 제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생략)</p> <p>4. 제11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연기 신청서(검사 당일 검사계획을 통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고려 검사 연기를 요청할 수 없음을 명확화</p>
<p>제13조(검사대상자의 자율 점검) ① · ② (생략)</p> <p>③ 세관장은 검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p>제13조(검사대상자의 자율 점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 띄어쓰기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당하는 방법으로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 <u>별표3의2, 별표4</u>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하거나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 ----- <u>별표 3의2, 별표 4</u>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7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등) ① 세관장은 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검사대상자의 사무실에서 외국환거래 관련 <u>장부</u> 및 서류의 열람·확인 검사와 구두 질문</p> <p>4. (생략)</p> <p>② (생략)</p> <p>③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각종 자료나 장부를 운반할 때에는 검사대상</p>	<p>제17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등) ①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문서화·전산화된 장부</u> 및 서류 ----- -----</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 전자문서 및 전산시스템으로 업무처리하는 현실 반영</p> <p>○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404('22.5.31.) '행</p>

현행	개정안	비고
<p>자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 검사대상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u>지불</u>해야 한다.</p> <p>④ · ⑤ (생략)</p>	<p>----- ----- ----- <u>지급</u>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반영</p>
<p>제18조(검사자료의 보관) ① · ④ (생략)</p> <p>⑤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자료 중 검사대상자와의 쟁점 사항 등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원본과 같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u>이 경우 검사대상자의 사본 보관에 대한 동의 표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 반환 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으로</u> 같음할 수 있다.</p> <p>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보관한 사본을 검사가 종결된 후에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p>	<p>제18조(검사자료의 보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자료 중 검사대상자와의 쟁점 사항 등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원본과 같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u>&lt;후단 삭제&gt;</u></p> <p><u>&lt;삭제&gt;</u></p>	<p>○ 검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실효성 확보 및 검사자료 반환 후 재요구에 따른 검사대상자의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검사자료 사본 반환 규정 폐지</p>

현행	개정안	비고
<p>자가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 관서에서 자체 폐기해야 한다.</p> <p>⑦ 세관장은 검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검사자료등과 제5항에 따라 보관하는 사본 중 증거로 사용할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사대상자에게 임의제출을 받아 압수</li> <li>2. 법관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li> </ol>	<p><u>&lt;삭제&gt;</u></p>	<p>○ 범칙조사 전환 및 압수절차는 별도의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p>
<p>제21조(검사종결 및 결과보고) ① 세관장은 검사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종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결과 통지서를 공문서에 첨부하여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지 기한을 검사를 종결</p>	<p>제21조(검사종결 및 결과보고) <u>&lt;삭제&gt;</u></p>	<p>○ 검사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에 있어 검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 확정 전 소명기회를 위한 검사결과 통지를 하여</p>

현행	개정안	비고
<p>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 할 수 있다.</p> <p>1.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 및 시정 필요 사항</p> <p>2. 검사 종결 이후 추가 검토 필요 사항</p> <p>3. 검사 결과에 따른 처리 방향</p> <p>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통지를 할 때에는 검사대상자가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 결과에 대해 소명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p> <p>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자의 소명 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대상자의 소명자료 검토 결과를 포함한 검사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범칙조사 전환으로 검사가 종결되는 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전환보고로</p>	<p>&lt;삭 제&gt;</p> <p>① ----- <u>검사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u> -----  -- <u>검사 결과</u>-----  -----  -----  -----  -----</p>	<p>검사결과 변경 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필요하게 검사결과를 지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검사결과 통보 절차 폐지</p>

현행	개정안	비고
<p>검사 결과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p> <p>④ 세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검사결과 등록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 3.(생략)</p> <p>⑤ (생략)</p>	<p>-----.</p> <p>② ----- 제1항-----</p> <p>-----</p> <p>-----</p> <p>-----</p> <p>-----</p> <p>-----</p> <p>-----</p> <p>1. ~ 3.(현행과 같음)</p> <p>③ (현행 제5항과 같음)</p>	
<p>제24조(공동검사의 요구) ① 관세청장은 영 제35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공동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4조(공동검사의 요구) ① ----- 영 제35조제10항 및 같은 조 제15항-----</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21.9.14.)에 따른 조 번호 변경 반영</p>
<p>제25조(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 요구에 대한 처리) 관세청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영 제35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p>	<p>제25조(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 요구에 대한 처리) ----- 영 제35조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p>	<p>○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21.9.14.)에 따른 조 번호 변경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공동검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 ----- -----.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 보칙</u></p> <p>제30조(재검토기한) 「<u>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u>매3년</u>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u></p> <p>제30조(재검토기한) <u>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u> ----- ----- <u>매 3년</u> -----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 번호 수정</li> <li>○ 재검토기한 재설정 및 조문 정비</li> <li>○ 띄어쓰기 수정</li> </ul>

※ 별지 서식은 붙임과 같음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반시 벌칙*(과태료)
지 급 등 의 방 법  ( 상 계 )	<b>1</b>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 <b>6</b> 번으로 이동		
	<b>2</b> 비거주자와의 대외거래로 발생한 채권·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다른 채무·채권으로 상계하고 잔액을 결제하고 있다. (잔액에 대하여 Debit·Credit note를 발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 <b>5</b> 번(상호계산제도) 확인 후 <b>6</b> 번으로 이동		
	<b>3</b> <b>2</b> 항에 따른 상계를 하면서, 외국환 은행의장에게 사전 신고 또는 상계 후 1개월내에 사후보고 하였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건당 위반금액 25억원 이하 > 위반금액 2%와 100만원 중 큰 금액
② 상계신고 위반 : 벌칙(과태료) 대상				
<b>4</b> <b>2</b> 항에 따른 상계를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였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건당 위반금액 25억원 이하 > 위반금액 4%와 200만원 중 큰 금액	
	② 상계신고 위반 : 벌칙(과태료) 대상			
<b>5</b> 비거주자와의 빈번한 채권·채무 결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기간의 거래내역을 계정에 대기 또는 차기후 주기적(회계기간내)으로 결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서로 상계하기 위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 신고서를 제출 하였다.	※ 상호계산계정의 결산은 회계기간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결산주기를 정하여 실시하며,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 결산해야 합니다.			

\* 벌칙 : 건당 위반금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단,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반시 벌칙*(과태료)
지 급 등 의 방 법  ( 기 간 초 과 지 급 등 )	<b>6</b> 계약건당 미화 5만불 초과하는 수출 거래가 있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 <b>8</b> 번으로 이동		
	<b>7</b> <b>6</b> 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 가.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 채권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 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 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 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 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① <b>10</b> 번 신고여부 확인		
<b>8</b> 계약건당 미화 2만불 초과하는 수입 거래가 있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 <b>11</b> 번으로 이동			
<b>9</b> <b>8</b> 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가.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금을 수입 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 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 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 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나.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 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 하고자 하는 경우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① <b>10</b> 번 신고여부 확인			
	<b>10</b> <b>7,9</b> 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신고를 하고 지급, 수령을 하였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건 당 위 반 금 액 25억원 이하 > 위반금액 4%와 200만원 중 큰 금액
		② 기간초과지급 등 신고 위반 : 벌칙(과태료) 대상		

\* 벌칙 : 건당 위반금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단,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반시 벌칙*(과태료)
지 급 등 의 방 법  ( 3 자 지 급 등 의 방 법 )	<b>11</b> 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결제를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 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님에도 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 하였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 <b>16</b> 번으로 이동		
	<b>12</b>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 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 이전 포함) 나. 인정된 거래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금을 관계성이 확인된 중개·대리인에게 지급 다. 단순수입대행거래에서 위탁자인 거주자가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라. 거주자간 결제를 위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마. 외국환은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명의로 개설된 에스스로 계좌를 통해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바.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하는 경우 및 동 자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사. 거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제3자거래 신고예외 사항 <b>16</b> 번으로 이동 ② <b>14, 15</b> 번 신고여부 확인		
	<b>13</b> 외화 채무를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국내 거주자를 대신하여 거주자의 외화 채무를 대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사례] 비거주자와의 외화채무를 국내계좌 (환치기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① <b>14, 15</b> 번 신고여부 확인		
<b>14</b> <b>12</b> 를 제외하고 미화 5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분할시 합산금액)을 <b>11, 13</b> 과 같이 지급 하면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 신고하였다.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개월내 사후보고)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건 당 위 반 금 액 25억원 이하 > 위반금액 2%와 100만원 중 큰 금액	
<b>15</b> <b>12</b> 를 제외하고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b>11, 13</b> 과 같이 지급 하면서 한국 은행총재에 사전 신고하였다.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개월내 사후보고)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건 당 위 반 금 액 25억원 이하 > 위반금액 4%와 200만원 중 큰 금액	
	② 3가지급 등의 방법 신고 위반 : 벌칙(과태료) 대상			

\* 벌칙 : 건당 위반금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단,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반시 벌칙*(과태료)
지 급	<b>16</b> 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결제를 위해 외국환은행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수령은 신고 예외사항		
등 의 방 법  (외 국 환 은 행 을 통 하 지 않 은 지 급 등)	<b>17</b>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지급을 하고 있다. 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우편환 또는 유네스코 쿠폰으로 지급 나.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 다.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라. 법인의 예산으로 환전한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소속의 해외여행자가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마. 본인명의 신용카드로 지급하거나 미화1만불 이하의 경우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바. 대외 채무 결제,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설치 및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휴대 반출하여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b>18</b> 상기 <b>16</b> , <b>17</b>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외국환은행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포함) 등을 하고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였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신고 위반 : 벌칙(과태료) 대상  < 건 당 위 반 금 액 25억원 이하 > 위반금액 4%와 200만원 중 큰 금액

\* 벌칙 : 건당 위반금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단,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반시 벌칙*(과태료)
자 본 거 래	<b>19</b> 비거주자와 예금·신탁거래, 금전대차거래, 채무보증거래, 대외지급수단·채권·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증권 발행, 증권취득, 파생상품거래, 부동산 거래, 담보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 거래,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 거래에 따른 자본거래를 하고 있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 <b>24</b> 번으로 이동		
	<b>20</b>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지급 등의 금액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합산한 금액)이 <u>미화 5천불</u> 이내이다.(‘17.7.17.이전은 2천불)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자본거래 신고 예외사항		
	<b>21</b>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지급(수령)금액이 <u>미화 5천불</u> 초과 <u>5만불</u> 이내이고, 연간 지급(수령)누계금액이 5만불이내인 경우로서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의 내용을 확인받아 지급(수령) 하였다. (‘17.7.17.이전은 2천불 초과 5만불이내)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b>22</b> <b>20</b> , <b>21</b> 의 자본거래를 제외하고 <b>19</b> 의 자본거래를 위해 자본거래 신고(수리) 기관[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총재,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하여 신고수리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b>23</b> 신고 내용에 변경이 있어 변경 사항 및 변경 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수리) 기관에 자본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였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건 당 위 반 금 액 10억원 이하 > 1) 외국환은행장 신고 대상 : 위반금액 2%와 100만원 중 큰 금액 2) 기재부장관, 한은총재 신고 대상 : 위반금액 4%와 200만원 중 큰 금액	
	② 자본거래 신고위반 : 벌칙(과태료) 처분			

\* 벌칙 : 건당 위반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단,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반시 벌칙*(과태료)
해 외 직 접 투 자	<p><b>24</b>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경우가 있다.</p> <p>가.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설립중)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이상을 취득하여 경영에 참여 나. 투자비율이 10%미만 이더라도 임원과견,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 유지 다. 현지법인 등을 설립 라. 기 설립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로 대부투자를 하고 있다.</p>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p><b>25</b> <b>24</b>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장에 사전 신고하고 절차를 진행하였다.</p>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p><b>26</b> 투자지분감액, 투자지분양도, 유효기간 연장,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회사(지분 10%이상 출자) 설립 등으로 <b>25</b>의 해외직접투자 내용이 변경되어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 신고를 하였다.</p> <p>(다만 기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 및 증액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규신청 절차에 준함)</p>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p>&lt; 건 당 위 반 금 액 10억원 이하 &gt;</p> <p>위반금액 2%와 100만원 중 큰 금액</p>
	<p><b>27</b>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 활동을 위해 해외지점을 설치 및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리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국외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다.</p> <p>(해외지점의 영업기금은 해외지사경비 지급신고에 의해 지급,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송금신청서에 의해 지급)</p>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사항 없음				
<p>② 해외직접투자 신고위반 : 벌칙(과태료) 처분</p> <p>※ 자율점검 절차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p>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수 출 입 실 적 및 외 국 환 거 래 내 역	1. 검사대상기간 수출입 및 외환 지급·영수 실적(세관 제공) - 과지급 또는 미지급 사유(업체 제출) - 과영수 또는 미영수 사유(업체 제출)	
	2. 검사대상기간 중계무역 수출입 및 외환 지급·영수 실적(세관 제공) - 과지급 또는 미지급 사유(업체 제출) - 과영수 또는 미영수 사유(업체 제출)	
	3. 해외직접투자 금액(세관 제공) - 투자지역·내용·기간, 신고은행, 투자금액 회수여부 등 해외직접투자 관련 전반적인 내용(업체 제출)	
	4. 기타 검사대상자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 업체 자율 점검이 필요한 사항	

○ (작성 자) 소속 :                      직책 :                      작성자 :                      (인)  
 ○ (작성일자) 20 . . .





[별지 제11호서식]

##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외국환거래 검사 재개 통지서**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사(귀하)에 대한 외국환거래 검사를 재개합니다.

- 아 래 -

당초검사기간	. . . ~ . . .
검사중지기간	. . . ~ . . .
검사재개일자	. . .
남은검사기간	. . . ~ . . .

끝.

##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